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최선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 3070 발 의 년 월 일:2022년 01월 21일 발 의 자:최 선, 김기대, 김재형,

김정태, 김제리, 김태수, 김희걸, 박기열, 박상구, 박순규, 송명화, 이광호, 이병도, 이영실, 장상기, 전석기, 홍성룡 의원(17 명)

1. 제안이유

- 서울시는 자치구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조정교부금의 한 종류로 자치구의 특별한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을 조정교부금 총액의 10%로 운용하고 있음.
- 다만, 타당성 조사, 투자심사, 의회 동의절차 등의 선행이 필요한 일부 신규사업과 의회 예산심의에서 삭감된 사업예산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편성ㆍ집행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바,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.
- 따라서 특별조정교부금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존 구의회 뿐만 아 니라,시의회의 예산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과 신규사 업에 대해서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를 금지하려는 것임.
- 또한, 분기별로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실적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해 사업 집행현황을 점검함으로써 서울시의 교부사업 이행실적 검토와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 또는 신규사 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하거나 신청할 수 없도록 함(안 제11조제5항).
- 나. 특별조정교부금의 이행실적 검토와 사후관리를 위한 시의회 보고 근거를 규정함(안 제11조제6항 신설).

3. 참고사항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5항 중 "자치구청장은"을 "시장과 자치구청장은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"시의회"라 한다)와"로, "지출항목"을 "지출항목 또는 신규사업"으로, "신청"을 "교부하거나 신청"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교부 실적을 시의회 소관 상임위 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보고시기가 폐회 중일 때는 의장과 상임위원 장에게 우선 보고한 후 다음 회기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보고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개 정 안 현 행 제11조(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) 제11조(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) ① ~ ④ (생 략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자치구청장은 자치구의회의 │ ⑤ 시장과 자치구청장은 서울특 별시의회(이하 "시의회"라 한 예산안 심의결과 폐지되거나 감 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특별 다)와 -----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교부금 --- 지출항목 또는 신규사업--을 신청할 수 없다. -- 교부하거나 신청-----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 <신 설> 조정교부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교부 실적을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에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보고 시기가 폐회 중일 때는 의장과 상임위원장에게 우선 보고한 후 다음 회기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보고한다.